학생도 선생님도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중고등학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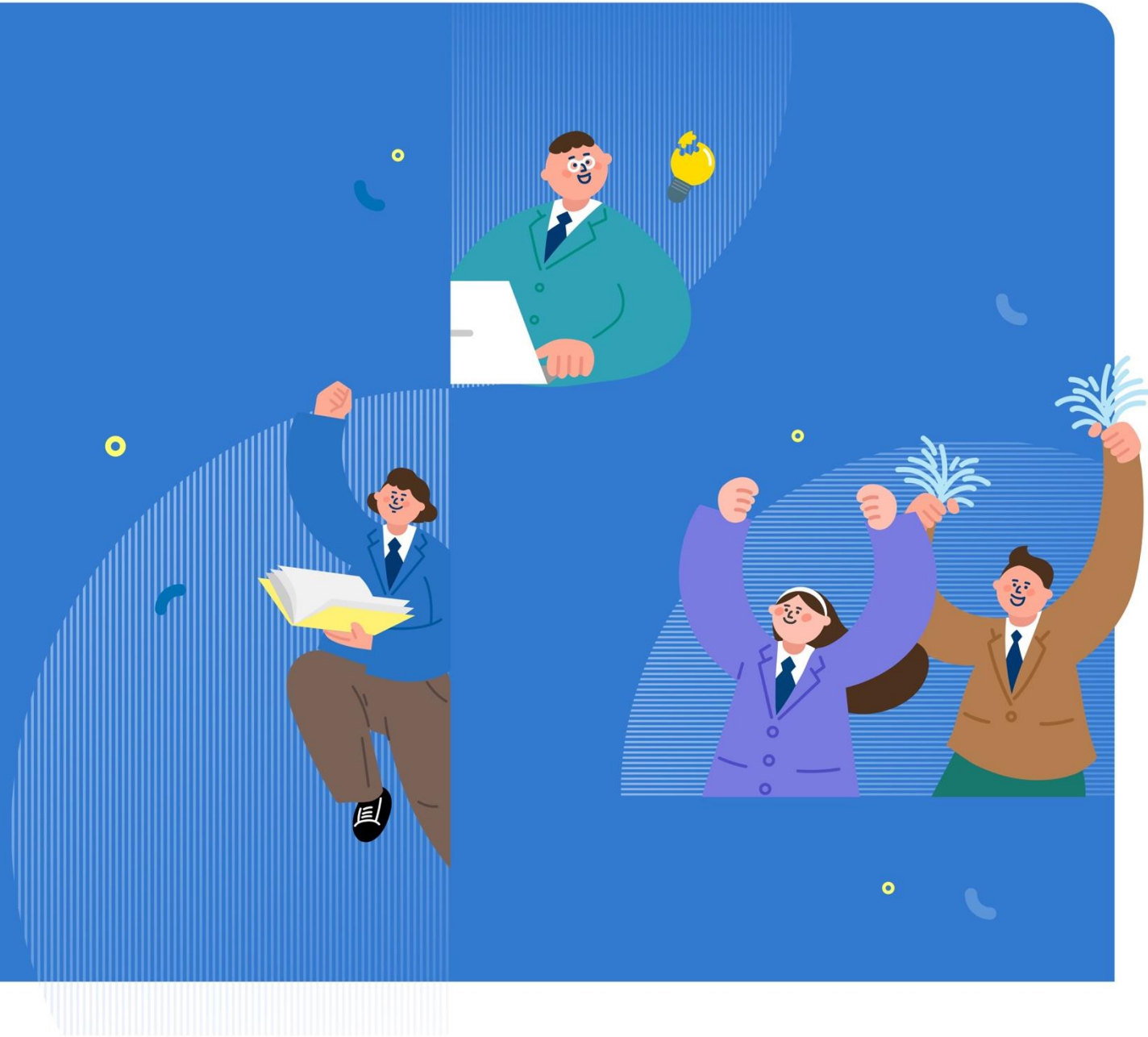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목차
CONTENTS

1 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나요?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와 목적)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유형)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4 함께 풀어보는 교육활동 보호 퀴즈

5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노력

1

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나요?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와 목적)

학교는 어떤 공간인가요?

- 수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
- 친구들과 함께 꿈을 나누는 공간
-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배움을 나누는 공간
- 선생님의 도움으로 사회인이 되기위한 인성을 갖추는 공간
-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

교육활동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는 꼭 필요하다.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모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교육활동은 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 12. 21.

제12조(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 ·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활동은 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 12. 21.

제13조(보호자)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교육활동은 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활동 침해 개념과 유형)

교육활동 침해 개념과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 주체

소속 학교의 학생, 보호자 및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

침해 대상

공·사립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침해 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 개념과 유형

‘교육활동 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교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활동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 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 항목과 관련된 활동

교육활동 침해 행위유형 [교원지위법 제 19조]

형사처분 대상 행위

폭행/상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ex. 선생님의 어깨를 손, 몸 등으로 밀친 경우, 선생님의 신체를 향해 휴대 전화기를 집어던진 경우)

명예훼손

선생님의 평판이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사실 또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위(ex.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OO선생님이 특정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유형 [교원지위법 제 19조]

형사처분 대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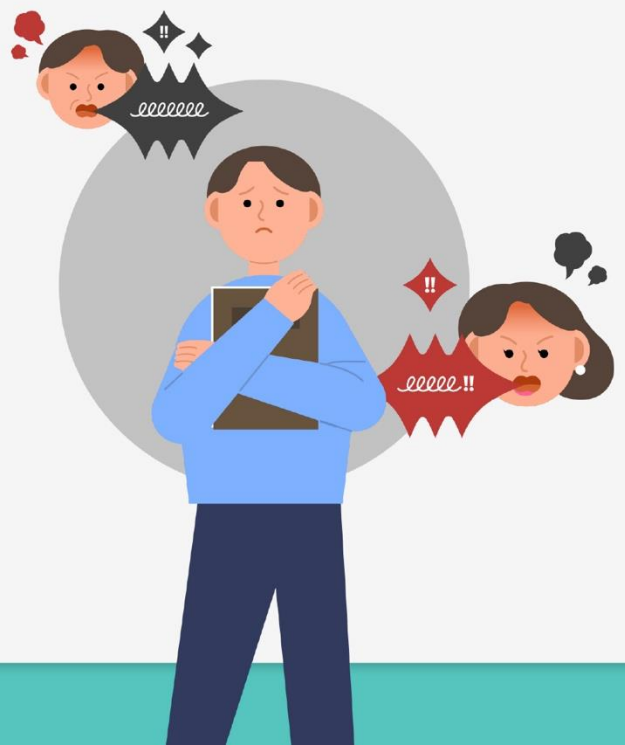

손괴

학교나 선생님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쓸모없게 만드는 행위 (ex. 선생님의 교무수첩의 일부를 찢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불법정보 유통

선생님의 사진, 영상 등을 몰래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행위(ex. 수업 중인 교사의 얼굴을 촬영 후 합성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무단 배포한 경우)

협박

무섭게 해서 겁을 주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유형 [교원지위법 제 19조]

형사처분 대상 행위

무고(거짓고발)

선생님이 처벌 받도록 거짓말을 해서 신고하는 행위

성폭력 범죄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ex.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선생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 및 촬영물을 소지하고 저장하고 시청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ex. 수업 중 옆자리 학생과 떠들며 휴대폰을 사용해 선생님이 지도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유형 [교원지위법 제 19조]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선생님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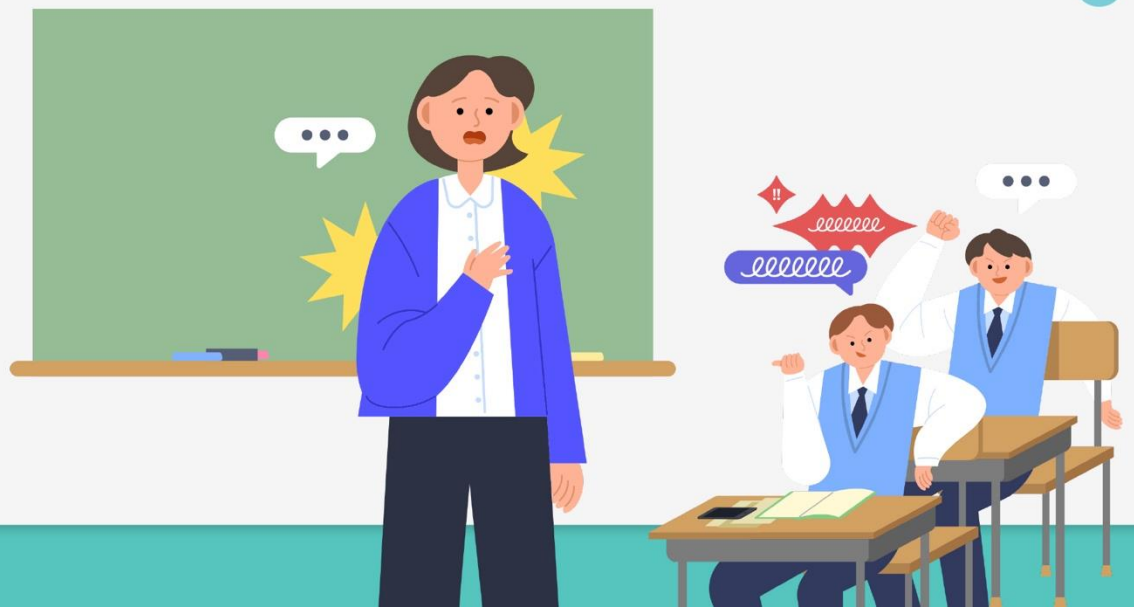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교육부 고시 제 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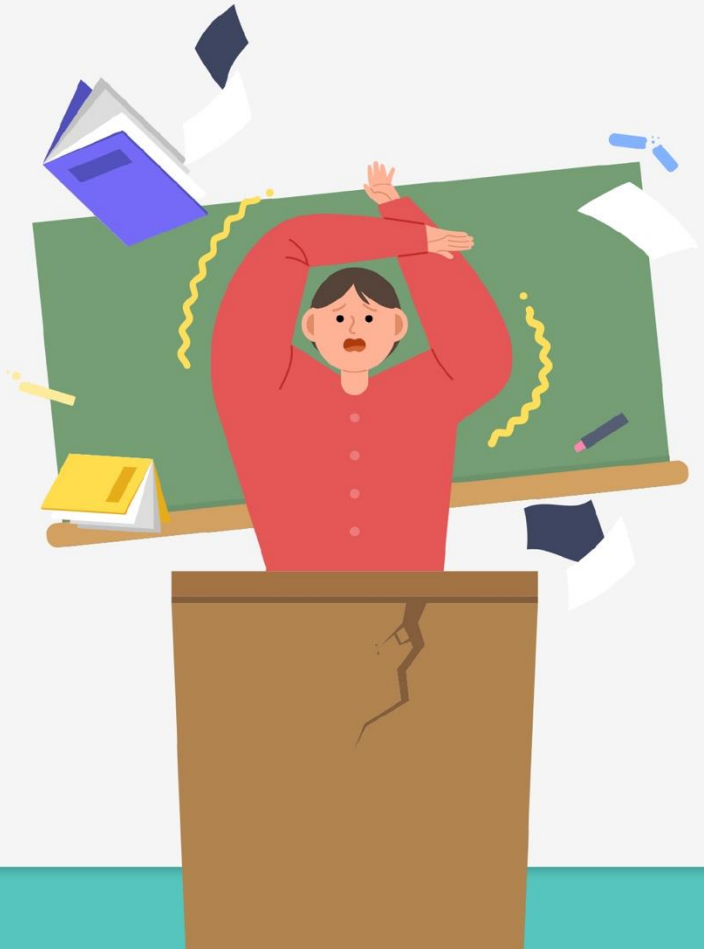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 성희롱
- 반복적 부당 간섭
- 선생님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 43조 제 1항(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나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에 따라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

교내선도	1호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호	사회봉사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환경 변화	교내 4호	출석정지
	교내 5호	학급교체
	교외 6호	전학
	교외 7호	퇴학처분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26조) 2024.9.27. 신설

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항

선생님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과태료)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함께 풀어보는
교육활동 보호 퀴즈

교육활동 보호 퀴즈

Q

폭력을 행사하는 시늉은 했지만
실제로 사람의 신체와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인가요?

A

맞습니다

**접촉 없이 때리려는 흉내만 낸 경우처럼 직·간접의
물리력만 써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퀴즈

Q

친구가 선생님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다른 친구에게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교육활동 침해인가요?

A

맞습니다

남을 모욕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퀴즈

Q

어떤 선생님이라고 지정하지 않은
성적인 농담도 교육활동 침해인가요?

A

맞습니다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퀴즈

Q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을
하거나 신경 쓰이는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A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퀴즈

Q

선생님에게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고 밤길 조심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교육활동 침해인가요?

A

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길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라면 이는 협박에 해당됩니다

5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함께 만드는 노력

학생도
선생님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활동 1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급 규칙 만들기

활동 2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카드 뉴스 제작하기

활동 3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한 적합한 조치 부여해보기

활동 4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학교 정책 제안하기

학생도 선생님도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경남교육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